

북한 장애인복지 현황에 따른 남북교류 방향

정지웅 (배재대학교)

1. 서 론

남한과 북한의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에 사회복지제도를 어떻게 설계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이 된다. 특히 사회복지의 “국토의 물리적 통합 이전부터 추진되어야 하는 사회적 통합의 과제”(오정수, 2000: 64)이며, 통일 후에도 “남북한의 제도적 차이와 경제구조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안정 요소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안”(박종철 외, 2011: 116)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사회복지의 여러 영역들 중에서도, 장애인복지 영역에서의 통일 준비는 장애인이 대표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이면서도, 북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매우 부족한 상황(김석향, 2011: 87)임을 감안할 때, 더욱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에 대비한 장애인복지 연구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금까지 이와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로는 북한 장애인의 복지수준 및 권리 신장을 위한 연구(이규창, 2013; 이준우, 2015), 북한의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교육 제도 자체를 분석한 연구(노용오, 2006; 이철수, 2012; 김동일·이태수, 2007; 김동일·배성직, 2001), 그리고 제도적 측면의 연구가 아닌, 북한 장애인의 생활실태를 질적 고찰한 연구(qualitative research)(김석향, 2010; 김석향, 2011) 등이 있다. 한편, 통일 관련 장애인복지 연구와 간접적, 맥락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선행연구들로서,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Kim, 2002; 권형돈·최

* 정지웅,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졸업,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석·박사. (전)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연구원, (현)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조교수.
관심 연구분야는 장애인복지, 통일사회복지, 종교사회복지, 생태주의적 사회복지 등임.

유, 2012; 우해봉 외, 2011; 연하청·황나미, 2010; 유근춘 외, 2015; 이현경, 2013; 장용철, 2015; 이용하·이정우, 2002)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의 장애인복지의 현실 태를 미시적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가운데 있다. 통일에 대비한 장애인복지 연구의 방향은 거시적, 담론적 측면에 집중한 것도 필요하지만, 미시적인 사업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을 법률, 공급체계, 구체적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북한 장애인복지정책의 특성이 무엇이며, 향후 통일에 대비하였을 때 정책 특성이 갖는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서적,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게시물 등을 정리하는 문헌고찰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2. 북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초: 장애인구 및 법규 현황

1) 북한 장애인구 현황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지속적으로 접근을 허용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물론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 관련 국제비정부기구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장애인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통일연구원, 2016). 다만, 북한은 장애인보호와 관련하여 2003년 6월 18일 장애인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리고 10년만인 2013년 7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장애인 인권보호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이규창, 2013: 2).

북한 당국은 장애인보호법에서 “국가는 장애자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장애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 기준을 바로 정하도록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²⁾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다만, 북한은 장애인보호법 제정 이전에 한 차례, 제정 이후에 두 차례 장애인 실태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통일연구원, 2016).

1) 북한에서는 2003년에 장애인보호법을 제정한 이후, 장애인을 ‘장애자’라고 표현한다. 2003년 이전까지 북한에서는 장애인을 ‘불구자’라고 표현하였다.

2) 이 논문에서는 북한용어를 사용하거나 북한자료를 직접 인용할 경우에 국한하여 우리말 맞춤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로 표기하는 방식을 따랐다.

〈표 1〉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비준·가입 현황

조약명	상태	가입/비준일 (통보/기탁일 기준)	발효일
자유권규약	가입 ³⁾	1981.9.14.	1981.12.14.
사회권규약	가입	1981.9.14.	1981.12.14.
아동권리협약	비준	1990.9.21.	1990.10.21.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2014.11.10.	2014.12.10.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2001.2.27.	2001.3.29.
장애인권리협약	미비준(2013. 7. 3. 서명)		

출처: 통일연구원(2016: 39)

첫 번째 실태조사는 1998년 ‘조선장애자지원협회’가 조사한 것이다. 본 조사는 평성시, 원산시, 평안남도 평원군, 황해남도 벽성군, 강원도 통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로서, 조사 결과, 북한에는 전체 인구의 3.41%에 해당하는 76만 3천237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이중 남성 57.4%, 여성 42.6%로 나타났고, 거주지역은 농촌지역(35.4%)보다 도시(64%)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각장애 21.63%, 청각장애 22.03%, 지적장애 3.50%, 정신장애 4.95%, 중복장애 9.04%로 보고되었다. 한편 평양시의 장애인 비율은 1.75%로 나타났다(中西由起子, 2014; 통일연구원, 2016 재인용).⁴⁾

두 번째 실태조사는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중앙통계국과 함께 2011년 11월 3개 도에서 2천4백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이다.⁵⁾ 2012년 제14회 런던 장애인올림픽(8월 30일~9월 10일)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의 김문철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동 조사결과와 일부내용이 밝혀졌다. 동 조사에 따르면 시력, 청력, 지체(사지), 정신(지능포함), 복합장애 등 5대 부문의 장애인 인구는 5.8%로 집계되었다.⁶⁾

WHO는 “2013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장애(World Report on Disability)” 보고서에서 북한의 장애인 비율을 2007년 현재 전체 인구의 3.4%로 추정하고 있다. 장애유형별 장애 실태

3) 북한은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최초로 채택된 데 항의하여 자유권규약 탈퇴를 통고하였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은 1997. 9. 23. 북한에 보낸 비망록(aide-mémoire)을 통해 규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규약으로부터의 탈퇴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후 자연스레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당사국으로서의 지위 및 의무를 인정하였다.

4) 『연합뉴스』, 2006년 4월 9일; 『연합뉴스』, 2006년 11월 23일.

5) 『로동신문』, 2012년 9월 30일.

6) 『연합뉴스』, 2012년 9월 10일. 북한은 2014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위해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장애인 비율이 5.8%라고 밝히고 있다.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를 보면 북한 내 장애인 비중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과 언어장애, 지적장애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⁷⁾ 그리고 독일에 본부를 둔 대북 구호단체 ‘투게더-함흥’이 8월 7일부터 평양에서 ‘제7회 국제 농아모임’을 개최했는데, 약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⁸⁾(통일연구원, 2016 재인용).

세 번째 실태조사는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2015년 함경남도, 강원도, 평안남도 평안북도내 장애인들의 사회생활형편을 파악하여, 이 지역들에서의 장애출현율과 장애분포상태, 장애유형과 장애등급별 자료, 노동생활, 교육실태, 사회생활 전반형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결과북한의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6.2%로 나타났다(조선장애자보호연맹, 2015)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북한 정부가 공표하고 있는 장애인출현율이 해가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남한의 2015년 장애인출현율이 4.8%(보건복지부, 2015)인 것과 비교해 보면, 북한의 장애인 비율이 남한에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 북한 장애인복지 관련 법규 현황⁹⁾

북한의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으로는 1951년 <조국해방전쟁에서 불구자로 된 인민군 장병 및 빨치산들을 위한 영예군인학교 설치에 관하여>, <국가 사회보장에 관하여>, 1953년 <제대군인 및 영예전상자들의 직업 알선과 취학 조건을 보장할 데 관하여>, 1978년 <사회주의 노동법> 등이 있다. 북한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초기에는 영예전상자와 국가 공로자에 집중되었다가 점차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 2003).

북한은 1953년 5월 내각지시(24호)를 통해 장애인들이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들은 각지에 설치된 ‘양생원’에 수용하여 자활훈련을 시키고 있다. 북한의 이후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체계성을 이전에 비해 보다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 법규로는 사회보장법, 근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의료법 등이 있다.

(1) 장애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은 남한의 ‘장애인복지법’처럼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률로 평가할 수 있다(정지웅, 2016). 장애자보호법은 2003년 6월, 북한 최고인민회

7) 『미국의 소리』, 2013년 9월 20일;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 p. 82.

8) 『미국의 소리』, 2015년 8월 13일.

9) 이 부분은 정지웅(2016)의 제II장 2절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음.

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며(연합뉴스, 2013.12.06.), 구성은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장애자의 회복치료', '장애자의 교육', '장애자의 문화생활', '장애자의 노동',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총 6장, 54조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북한 장애자보호법의 장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목적: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의 회복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노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제1조) - 장애인에 대한 정의: “육체적, 정신적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공민“(제2조) - 장애예방과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의무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자의 회복치료’를 위한 각종 지원책 - 보조기구의 생산과 품질에 대한 규정
제3장 장애자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의무교육. - ‘맹인, 룡아인’ 등을 위한 특수학교 운영 - ‘점자 또는 손말연구사업’
제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이 문화 및 체육 활동 지원방안
제5장 장애자의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 -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인에게 보조금 지원
제6장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보호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조직화(‘장애자보호위원회’ 설치) -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내용 - ‘장애자의 날’, ‘장애자 후견인’ - 법률 위반 시 처벌 규정

출처: 정지웅(2016)

(2) 사회정책 관련 법률 중 장애인복지 관련 내용

북한의 사회정책 법률들은 교육관련 법률(보통교육법, 교육법, 고등교육법), 여성관련 법률(여성권리보장법), 아동관련 법률(년로자보호법(2012), 아동권리보장법(2010), 어린이보육교양법(1999)), 노동관련 법률(노동법, 노동보호법), 보험관련 법률(보험법, 사회보장법), 건강 관련 법률(의료법, 인민보건법, 적십자회법, 전염병예방법) 등이 있는데, 이중 ‘장애’ 혹은 장애 관련 용어가 포함된 법으로는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아동권리보장법, 노동법, 의료법이 있으며, 구체적인 표현은 <표 3>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다(정지웅, 2016).

〈표 3〉 북한의 사회정책 관련 법률에서 ‘장애(관련 용어)’ 단어가 포함된 조문

법률	‘장애’ 포함 조문
사회 보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사회보장대상) 사회보장의 대상에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 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속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자들에게 사회보장의 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한다. ▲ 제18조 (사회보장금의 지출대상)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연금, 보조금의 지불과 사회보장기관의 운영, 장애보조기구의 생산, 공급 같은 목적에 지출한다. 해당 기관은 사회보장금지출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 제25조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영예군인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같은 사회보장기관을 조직하고 책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37조 (보조기구생산, 공급의 기본요구) 보조기구는 장애자의 필수적인 생활보조수단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장애자들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때에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 제38조 (보조기구의 생산)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보조기구생산기업소는 장애자의 성별, 나이, 장애정도와 기호에 맞는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 제39조 (보조기구의 공급승인신청) 보조기구를 공급받으려는 장애자는 신청서를 만들어 해당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인민위원회는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40조 (보조기구의 공급) 보조기구는 정해진 기관, 기업소에서 공급한다. 보조기구를 공급받으려는 장애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을 해당 기관, 기업소에 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에 따라 보조기구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년로자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무장애환경 보장) 국가건설감독기관과 도시설계기관, 해당 건설기업소는 년로자의 생활상 안정과 편리를 도모하도록 도시계획과 살림집 및 대상설계, 건설에서 무장애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년로자의 개성적 특성과 생활에 편리하게 살림방을 꾸려주어야 한다.
보통 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학령어린이의 취학)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해마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빠짐없이 장악하여 취학시켜야 한다. 그러나 육체적 및 지적장애를 받은 어린이는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취학나이를 늦출수 있다. ▲ 제14조(장학금) 국가는 맹, 룡아학교, 제1중학교, 학원의 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 제15조(무의무탁자, 장애자의 교육 및 생활조건보장)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와 맹, 룡아 같은 장애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생활조건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준다. ▲ 제19조(보통교육기관의 구분) 보통교육기관은 학업내용과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년제학교전교육을 위한 유치원 2. 4년제초등교육을 위한 소학교 3. 6년제중등교육을 위한 중학교 4. 장애자교육을 위한 맹, 룡아학교 5. 특정한 대상의 교육을 위한 학원

범률	‘장애’ 포함 조문
아동권리 보장법	<p>▲ 제30조(장애아동의 보호)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똑같은 교육과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맹,聋아학교를 바로 운영하며 장애아동의 교육, 치료,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p> <p>▲ 제40조(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 부모 또는 후견인은 신체상결함이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p>
로동법	<p>▲ 제78조 국가는 로동능력을 잃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봐준다.</p>
의료법	<p>▲ 제28조 의료기관은 의사협의회에서 토의한데 따라 인공임신조작을 하며 선천성 대기형, 유전자병 같은것을 막기 위한 의료조작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적적응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p>

자료: 정지용(2016)에서, 아동권리보장법과 로동법 내용 추가하여 재구성.

3.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공급체계 및 사업 현황

1)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연혁

북한에서는 1951년 한국전쟁상이군인을 위한 보조기구를 생산하는 교정기구공장을 설립하고, 1959년 농아학교 8곳, 맹아학교 3곳을 설립한 이후, 약 40여년 동안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발전이 지체되어 왔다. 하지만 1998년에 조선불구자지원협회(이후 조선장애자보호연맹으로 변경)가 창설된 이후, 2003년에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장애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의 확대 개편 및 협회 산하에 “조선통인협회,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조선맹인협회, 조선장애자후원회사,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조선장애자예술협회를 비롯한 조직들과 관련기관들이 설립되어 장애자들의 건강회복과 사회활동,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조선신보, 2014.12.17)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나름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한편, 2013년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면서, 북한 당국이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의 발전 의지를 나타내고, 2013년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 출전 및 2014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에 출전하고, 해외의 장애인단체와 협력을 체결하는 등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

〈표 4〉 북한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연혁

시기	내용
1951년	교정기구공장 건립
1959년 9.2	농아학교 8곳, 맹아학교 3곳 설립
1948년 2월	조선민주맹인동맹 중앙위원회가 결성
1998년	조선불구자지원협회 창설
2003년 6.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제정
2003년	조선장애인지원협회로 개칭
2006년 7월	조선장애인보호연맹 중앙위원회로 확대 개편
2011년 1월	조선장애인체육협회 발족
2011년 9월	민족장애인올림픽위원회 조직
2012년 12월	런던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최초 참가
2013년	평양 문수기능회복원 개소
2013년 7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
2013년 가을	조선장애인예술협회 발족
2013년 10월	제3차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 참가 첫 메달 획득
2013년 11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정식 회원국 가입
2013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개정
2013년 12.3	제4회 세계장애인의날 기념식
2013년 12월	조선농인협회 발족
2014년 3월	조선맹인협회 발족
2014년 3월	조선장애인어린이회복중심 설립
2014년 6.18	2014년 국내 장애자의 날 연환모임
2014년 10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출처: 통일뉴스(2014. 10. 20), 조선신보(2014.12.17)를 토대로 재구성

2) 장애인복지 공급체계

(1) 중앙 및 지방 정부

“북한의 사회복지서비스공급체계는 조선노동당의 예비적 정책 기획 → 내각중앙성 → 도(직할시) → 시(구역)·군 → 읍·리(동·노동지구) 등 공적공급체계로 단일화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복지서비스공급체계는 사적공급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산업재해보상제도나 의료보장제도 등은 그 공급체계에 있어 직업총동맹이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조직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진정한 사적공급체계의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장용철, 2015: 84)

북한에서 “국가사회보장보호기관들에 대한 관리운영의 직접적인 담당자는 다름 아닌 해당도정권기관들이다. 도인민위원회는 양로원, 양생원을 비롯한 국가사회보장보호기관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관리운영과 관련한 로력, 물자, 설비, 자금, 보양생들의 생활필수품을 정확히 계획화하여 해당 기관에 맞물리며 승인된 계획과 국가재정예산을 바로 집행하며 보양생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줄데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김명옥, 2015: 78)

“현장의 복지시설은 복지서비스 종류별 도단위로 1개소 정도로 국한되어 전서비스범주를 망라하여 인구구성학적 측면에서도 그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장용철, 2015: 88)

장애인에 대한 급여가 식량, 교육, 의료, 주거, 생활보호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교육성, 보건성, 노동성, 장애자연맹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2)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1998년 7월 29일에 조선장애자지원협회로 설립되었다가, 2005년 7월 27일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장애인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장애자들의 모든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며 여러가지 지원활동과 옹호활동, 출판선전활동을 통하여 장애자들의 정신육체적기능회복과 무장애환경의 수립, 장애방지와 장애자들의 사회적지위보장에 기여함으로써 장애자들이 사회와 집단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것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조선인권연구협회, 2014). 연맹은 20여 명의 전임일꾼과 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및 각 도와 시, 군에 산하 위원회와 필요한 기구들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조선신보, 2006.10.23.). 조선장애자보호연맹 등 북한의 장애인단체는 해외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시작되었다고 평가되며, 북한 당국의 보건부에서 직원의 급여와 운영비가 나오고 있지만, NGO로 간주되고있다(中西由起子, 2014). 연맹은 보건성과 교육성, 도시경영성을 비롯한 국가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장애자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관련 국제기구들과 유럽동맹 나라들과의 협조활동도 추진하고 있다(조선인권연구협회, 2014).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산하에는 조선장애자예술협회,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조선장애자후원회사, 조선장애자원아기금이 있으며 도, 시, 군단위에 장애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조선신보, 2013.12.07).

(3) 장애인복지기관

〈표 5〉 북한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현황

구분	시설명	위치
시각장애인 복지기관	조선맹인협회	미상
	점글자정보기술센터	미상
	대동맹학교	평안남도 대동군
	함흥맹학교	함경남도 함흥시
	봉천맹학교	황해남도 봉천군
	맹인공장	미상
청각장애인 복지기관	조선농인협회	미상
	함흥聋아학교	함경남도 함흥시
	삼봉聋아학교	함경북도 온성군
	시중聋아학교	자강도 시중군
	봉천聋아학교	황해남도 봉천군
	봉산聋아학교	황해북도 봉산군
	운전聋아학교	평안북도 운전군
	원산聋아학교	강원도 원산시
무의탁 장애인거주시설	양생원	도단위 1개소 설치 (최근에는 몇 개도끼리 통폐합)
정신장애인 수용시설	49호 보양원	도단위 병원 1개소 군단위 요양소 1개소
장애아동시설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평양시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	장애자기능공학교	평양시
	장애자운송사업소	강원도 원산시
	평성 만년필 공장	평안남도 평성시
	만경대 만년필 공장	평양시
	장애자피복생산실(건립예정)	미상
장애인(이용가능)병원	문수기능회복원	평양시
	함흥정형외과병원	함경남도 함흥시
	평안남도소아병원	평안남도
보장구생산시설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	함경남도 함흥시
	송림교정기구공장	황해북도 송림시
	평양영예군인교정기구수리공장	평양시

출처: 연합뉴스, 장용철(2015: 85), 조선장애자보호련맹(2016), 中西由起子(2014), 조선신보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1〉 북한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위치



출처: 국제푸른나무(2016a)

3) 장애인복지사업

북한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적용대상은 엄밀하게 말해 해방이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무장 항일운동 부상자와 한국전쟁 부상자(민간인 포함)를 주요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이후 1978년 사회주의노동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78조 “국가는 노동능력을 잃은 돌 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준다”라는 규정에 의해, 법률적으로는 노동능력을 장애인들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노용오, 2006: 2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군인과 일반장애인의 복지 혜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일반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마지막에 상이군인을 위한 서비스 내용을 살펴해보도록 한다.

(1) 무의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장애인 수용시설

북한은 1953년 5월 내각지시(24호)를 통해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들은 각지에 설치된 ‘양생원’에 수용, 자활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로는 양생원 외에 장애고아를 대상으로 한 ‘특수애육원’,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49호 보양원’ 등이 있는데, 각 도에 49호 병원과 양생원이 하나씩 있고 각 군에는 49호 요양소가 하나씩 있다(북한 보건의료네트워크, 2003).

49호 보양원은 남한의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료와 검진을 실시하며, 시군 단위에 설치되는 49호 보양소는 일종의 정신장애인 관리소라 볼 수 있다. 도 단위의 49호 보양원에서 검진 및 일정기간 치료 이후 시군 단위의 보양소로 환자를 내려 보낸다. 시군보양소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방법이란 특별히 없고, 취침 30분전에 한 번 약물을 투약하는 것이 전부이며, 약물의 종류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동일한 약을 장기 투여하다보니 약물중독에 걸리는 환자들이 전체 환자의 약 30% 이상을 차지한다. 양약의 약물 치료 효과가 없어서 침, 뜸과 같은 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약제사들은 직접 도라지, 두충, 대황, 울무, 결명자 등을 직접 가꾸는 것으로 전해진다(좋은벗들, 2006).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은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산하조직으로서 2012년 3월 29일 장애자보호법에 따라 정식 등록되어 활동하는 기관이며, 보건성과 연계 속에 북한 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회복을 전문으로 맡아 수행하게 되었다(국제푸른나무, 2016a).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에서는 장애아동의 영양관리, 치료회복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시각장애인 복지기관

북한에서는 북한 당국의 승인에 따라 조선맹인협회와 조선손말통역원협회가 2014년 3월 22일 결성되었다(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에 따르면 “조선맹인협회는 맹인들로 조직된 맹인들의 자립조직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권을 가진 모든 맹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그들의 사회적지위를 보장하고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협회는 맹인들속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그들의 수요를 정상적으로 조사장악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과 맹인교육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맹인직업교육을 비롯하여 점글자출판물의 제작, 보급 및 공보활동을 적극 벌려 협회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고 소개하고 있다(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조선맹인협회는 세계맹인동맹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조선신보, 2014.06.24)

한편, 조선손말통역원협회는 “롱인들이 사회활동과 국제무대에서 동등한 기회와 평등, 충분한 참가를 보장받도록 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손말에 기초한 롱인들의 자유로운 언어적 접근과 교제를 보장하여 롱인들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실현하도록 하는것을 기본임무”로 설립되었으며, 역시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에 따르면 “협회는 손말통역에서 과학성, 유연성, 지속성, 동시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TV를 비롯한 대중보도수단, 다매체편집물들에 손말자막을 도입함으로써 손말의 표준화를 실현하며 롱인체육을 발전시키고 세계손말통역원협회와 여러 나라 손말통역원협회들과의 쌍무적 및 다무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소개되고 있다(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시각장애 아동은 초등학교 4년, 중학교 5년 등 총 9년간의 특수교육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850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맹학교는 1959년 3개소가 개교되어 운영 중이며, 이중 가장 큰 학교가 ‘대동맹학교(평안남도 대동군 소재)’로서, 8세부터 21세까지 41명이 한 반에 평균 5명으로 점자출판회의소가 제작한 교과서 및 점자장치를 사용하여 공부하고 있다. 학생 중 40%는 약시이지만, 점자학습은 필수이다. 몇 살이라도 입학이 가능하며 월반도 가능하다. 교사는 15명이 있으며, 모두 정안인이다. 기숙사가 병설되어 1 방에 5명이 생활하고, 교사 한 명이 사감을 맡고 있다. 시각장애아동의 가족은 대중 교통이 없고 국내 장거리 이동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형편과, 이동 시에 특별한 허가가 필요함에 따라, 학교로 자주 올 수는 없지만, 휴가철 등을 이용하여 아동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 시각장애인에 특화된 고등교육도 존재하는데, 가령, 청진외과대학은 1995년에 장애인을 위한 3년 과정의 고려전통의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1998년에 남성 4명, 여성 2명이 전통의사학위를 수여 받은 이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中西由起子, 2014).

〈표 6〉 북한의 시각장애인복지 사업 사례

사업명	내용
전문출판사와 맹학교 연결 정보망 구축	조선맹인협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글자정보기술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맹인들을 위한 점글자인쇄물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광명출판사와 대동맹학교(평양시 대동군), 함흥맹학교(함경남도 함흥시), 봉천맹학교(황해남도 봉천군)를 연결하는 정보망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맹학교 학생들은 컴퓨터망을 통하여 음성으로 된 각종 자료들을 입수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내용을 점자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통일뉴스, 2014.06.25.)
시각장애 회복을 위한 국제협력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는 백내장에 의한 시각장애의 회복사업 위해, 네팔 떨경가안과센터(Tilganga eye center)와 백내장방지 및 치료분야에서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박사 리따 그룽(Dr. Recta Grung)을 단장으로 하는 네팔 떨경가안과센터 대표단이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안과병원과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800여건의 백내장수술을 진행하였다. 오스트랄리아 프레드 홀로우즈재단(Australia Fred Hollows Foundation)의 후원을 받고있는 네팔 떨경가안과중심은 방문과정에서 안과의사들에 대한 강습을 진행하였으며 3대의 수술현미경, 초음파검진기, 이동식세극등과 6 000여개의 인공수정체 등 안과설비와 소모품을 기증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와 2014년부터 《회복가능한 실명에 관한 신속평가(Rapid Assessment for Avoidable Blindness)》 조사를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실무문제들을 토의하였다(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3) 청각장애인 복지기관

북한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당사자단체는 2013년 12월에 창립된 조선농인협회가 있다. 본 협회는 모든 임원들이 농인이며, “농인의 권리를 대표하고 사회활동에서 그들의 창조적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양시켜 부를 창조해나가도록 하는 것”을 협회의 기본사명으로 제시하고 있다(조선신보, 2014.06.24). 또한 농인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농인 직업교육 실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협회는 2011년 2월 9일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와 세계농인련맹사이에서 채택된 양해각서에 따라, 세계농인연맹에 성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조선신보, 2014.06.24).

청각장애아동 교육의 경우, 시각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4년, 중학교 5년 등 총 9년간 8500시간의 특수교육을 받는다. 농학교는 원산시 함흥시, 성천군, 봉산군 등 8개교가 있고, 6세부터 15세까지의 약 1250명이 수화로 교육을 받고 있다(中西由起子, 2014).

〈표 7〉 북한의 청각장애인복지 사업 사례

사업명	내용
손말강습 (수화교육)	2014년 5월초부터 7월초까지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 하에 봉천, 봉산, 운전, 성천통아학교들에서 조선손말강습이 진행되었다. 강습에는 통아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여 130여명이 참가하였다(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청력장애회복 강습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와 《올 이어즈캄보자》와의 청력장애 방지 및 회복관련 협력사업이 2015년 5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강습에서는 청력진단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취급하고 청력장애어린이들을 위한 청력회복실을 꾸리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봉산통아학교와 봉천통아학교의聋인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력장애회복봉사도 진행하였다(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4)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

북한에서 장애인의 노동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은 장애자기능공학교, 장애자운송사업소, 만년필 공장, 교정기구공장 등이 있다.

북한에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노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1959년 9월 북한 소재 통아학교와 맹학교들이 운영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교육단위들에서는 과외수업의 형태로 직업기술교육도 진행하였다(조선신보, 2016.05.07). 또 1960년 장애인의 생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남포, 청진 등에 시각장애인 공장을 건설하고, 못, 우산, 가방의 손잡이 등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 공장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¹⁰⁾ 시기에 경제적인 곤궁에 폐쇄되었다. 또한 지방 도시와 군 지역에서 봉사시설을 만들어 인감 조각, 시계·TV·신발 수리, 미용 등의 직업에 종사하게 했다(中西由起子, 2014).

이후, 북한에서는 2012년 5월 2일에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에 의해 장애자기능공학교가 개교되었다(中西由起子, 2014). 여기서는 장애인들에게 취미와 능력에 따라 재학기간(2년)에 컴퓨터기술과 약전(弱電)기술, 피복가공, 목제가공, 식료가

10) 고난의 행군은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경제사정이 극히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김정일이 내놓은 당적 구호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상징하는 것은 배급의 중단, 배고픔과 굶주림,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로서, 실제로 2010년 대한민국 통계청이 유엔의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발표한 북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1996-2000년)'시기 아사자 수는 대략 33만여 명이다. 즉 고난의 행군이란 용어가 북한당국에게 사상의지를 강조하는 정치적 구호였다면, 북한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은 국가의 배급중단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던 절박한 생존의 시기를 의미한다(북한정보포털, 2016).

공, 보조기구 수리 등의 전문기술들을 습득시키고 있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제5기 개학식과 제3기 졸업식이 시행되었다(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북한에서는 장애자기능공학교의 교원이 “우수한 실력가형의 대학졸업생들로 꾸려져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장애학생들은 “국내의 모든 대학생들과 똑같이 국가로부터 교복과 학용품, 교과서들을 무료로 공급받으며 공부하고 있다”(조선신보, 2016.05.07)라고 선전하고 있다.

장애인의 노동현장으로는 평성 만년필 공장, 만경대 만년필 공장,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 등이 있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장애인들과 장애인의 가족(주로 아내)이며, 장애인가족은 장애노동자의 조수 역할로 함께 일하고 있다(中西由起子, 2014).

장애자운송사업소에서도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장애자운송사업소는 주조유립동맹협조대표부 7조와 조선마라나타신용그룹, 국제푸른나무의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운송사업소를 장원물자보장소로 확대하고 업종을 늘렸고, 경영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건물과 정보설비, 식료품가공 설비를 보강하였다(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장애자운송사업소에서는 향후 총 2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미 확보된 5대를 우선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국제푸른나무, 2016b).

한편, 조선장애자보호련맹(2016)은 조선장애자원아기금과 러시아 동포의 협력으로, 장애자피복생산실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시설은 800여㎡의 건물에, 장애인 고용률은 30%이상이며, 장애인들이 피복 임가공, 주문봉사 등 주요 생산활동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5) 장애인보장기구 서비스

북한에서는 “모든 장애자들에게 접근가능한 봉사를 제공하는 것은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가 장애자들에 대한 봉사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다”(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라고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장애인보장기구를 생산하고 있는 시설은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 송림교정기구공장, 평양영예군인교정기구수리공장 등이 있으며, 이중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은 북한에서 언론 노출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시설로 판단된다.

1951년에 만들어진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은 영예군인의 의수, 의지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23,310㎡, 건축면적 9180㎡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350명의 직원의 대부분은 장애인 및 가족이며, 공장부지에는 의지, 보조기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장애인을 위한 숙박 시설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기구의 지급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中西由起子, 2014). 특히,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에서는 가족대신 불포화수지에 의한 교정기구제작기술을 완성한 것을 자랑거리로 보도하고 있다(로동신문, 2016.7.20).

조선장애자보호련맹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교정기구이동수리봉사’를 매년 수행하고 있는데, 2015년 4월에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과 함흥교정기구공장의 일군들과 함흥정형외과병원의 물리치료사들과 함께, 황해남도 신천군의 지체장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286명의 장애인들이 새로운 교정기구, 정형기구, 보조기구를 공급받았다(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6) 조선장애자원아기금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 운영하고 있는 조선장애자원아기금은 2010년 1월에 창설되었으며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장애자원아기금은 조선에서 장애자들과 애육원, 육아원, 학원¹¹⁾원아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비정부단체”라고 소개되고 있다(내나라, 2016). 본 기금을 통해 ‘장애자전문기업소’ 설립, 장애아동을 위한 기능회복치료, 의료봉사, 영양상태 개선, 생활환경개선, 문화, 체육, 예술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내나라(2016)에 따르면, “장애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기계 및 전자제품조립, 피복, 구강보철, 안마 등 장애자들의 특성과 소질에 따르는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기금의 중요한 활동”으로, “기금은 장애자 및 원아관련 민족협회들, 장애자, 원아보호사업에 기증과 협조를 희망하는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단체들, 국내외의 개별적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장애자 및 원아보호사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활동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최근 조선장애자원아기금에서는 최근 장애자피복생산실 건립 등으로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을 꾀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인도주의 단체들, 해외동포들과의 협력 하에 기금조성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장애자기업 창설도 늘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7) 장애인(이용가능) 병원

북한에는 “각 도, 시, 군병원들에 기능장애자치료를 위한 물리치료과가 있으며 중앙의 여러 병원들에도 회복의학강좌들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조선신보, 2013.12.17). 이와는 별도로 북한에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로는 문수기능회복원을 들 수 있다. 조선신보(2013.12.17)에 따르면, 문수기능회복원은 2013년 12월 6일에 개원하였으며, 평양의 대

11) 북한에서는 고아(孤兒)를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로 육아원, 애육원, 학원이 있다. 육아원(育兒院)은 유치원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며, 애육원(愛育院)은 유치원 나이의 어린이를 양육하는 곳이고, 이후 초등학교(初等學院)와 중등학교(中等學院)에 입학하여 공부하며 생활한다. 이처럼 고아들을 위한 ‘육아원-애육원-초등학교-중등학교’ 연계 교육제도는 북한의 정규 의무교육 제도인 ‘탁아소-유치원-초등학교-초급중학교-고급중학교’ 제도와 비교될 수 있다(최재영, 2015).

동강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의 기능성회복치료의 모체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연건축면적이 1만 7,500여㎡의 규모의 3층건물이다. 이 회복원은 병원내 모든 구간들을 단차를 없앤 무장애환경으로 구성하고, 매층마다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접수와 약국의 접수대도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높낮이가 조절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또한 회복원에는 손발치료실, 근육강화치료실, 일상생활동작치료실, 작업치료실, 물치료실, 감탕, 파라핀치료실을 비롯한 신경, 심장기능회복치료와 각종 물리치료, 외과치료들을 할수 있는 50개의 치료실들과 10여개의 입원실들이 있다. 작업치료실에는 손정밀기능평가도구, 집게식손훈련도구, 25칸뽑기훈련판을 비롯하여 일정한 작업을 거둬하는 과정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60여종의 치료기구들이 구비되어 있다. 한편, 다목적렌트겐, 심폐기능검사기, 3차원심장초음파진단기, 체중감중계, 뇌파기를 비롯한 150여종에 달하는 치료설비들이 일반기능장애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향후 회복원에서는 기능장애자들의 회복치료봉사를 진행하면서 각 도병원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봉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조선신보, 2013.12.17).

또한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지체장애인들이 교정기구를 착용하는데 편리하기 위한 절단수술을 받도록 함흥정형외과병원에 대한 현대화를 실시하였고, 의료소모품들과 약품들을 보강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기능회복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김만유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의 회복치료설비들을 보강하고, 시중호료양소를 현대화하며, 탄광을 비롯한 노동현장 병원들의 기능보강도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NK조선, 2006.04.05).

(8) 영예군인¹²⁾ 지원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인복지제도의 수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북한에서 영예군인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김석향, 2010; 노용오, 2006). 김석향(2010: 15~16)은 북한의 장애인지원법 제7조¹³⁾와 인민보건법 제11조¹⁴⁾에 영예군인에 대한 “사회적 우대”와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선전되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김일성 저작집에 “영예군인들과 불구자로 된 애국자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진출하여 일할 수 있도록” 영예군인학교를 설치하고²⁷⁾ 영예군인공장을 설립하여²⁸⁾ 이들이 일하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다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밖에, 『조선녀성』이라는 북한잡지의 분석을 통해, 북한 사회 내에서 기차나 버스, 식당에 영예군인 좌석을 지정하고 상

12) 북한에서는 상이군인(傷痍軍人)을 영예군인(榮譽軍人)이라고 한다.

13) 장애인지원법은 제7조: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을 비롯한 장애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한다”

14) 인민보건법 제11조: 국가는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영예군인, 인민군 후방가족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돌린다.

점 등에서 영예군인 우선봉사 안내문 등이 설치되며, 시설이 잘 갖추어진 살림집을 공급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김석향, 2010: 15-16).

실제로, 영예군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다. 영예군인은 부분노동이 가능한 경우, 각 시·군단위로 있는 경노동공장에 취업을 하하며, 상이군인들로만 구성된 이른바 ‘상이군인 기업소’가 행정단위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업소의 전체 노동자 중 10%는 영예군인의 가족들인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노용오, 2006: 229).

영예군인의 고용 이외에, 무상치료와 교정·의료기구 무상보급, 매월 정기검진, 간병인 보조, 거주시설을 통해 장기치료, 영예군인병원, 영예군인요양소·휴양소 등이 있으며, 특히 영예군인 본인이 입원보다 자택에서 치료를 희망할 경우 간병인을 영예군인 자택에 파견해 주기도 한다(노용오, 2006: 229).

영예군인학원은 북한의 상이군인 재활교육을 담당하는 고등 교육기관으로, 군복무기간중 부상으로 제대한 군인인 '영예군인'(상이군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1972년 9월부터 3년제 고등전문학교 체제로 개편을 하였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전공한 학과에 따라 준(準)기사자격을 수여하며 동시에 대학입시자격도 주어진다. 교육과 생산노동, 이론 및 실천교육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기술자와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공업경제학과, 건축설계학과, 기계설계학과 등을 개설하고, 1년제 양성반도 함께 개설되어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시설로는 3만1천㎡의 부지에 교사(校舍) 2동과 3층짜리 기숙사, 식당, 목욕탕 등 편의시설, 원생들의 부식물을 생산하는 양어장(450㎡), 채소 온실(560㎡), 버섯 재배장(50㎡) 등이 있고, 강사진은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 및 이 학원을 졸업한 상이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연합뉴스, 2006.02.23.). 학원 졸업 이후에는 각 공장을 비롯, 기업소와 경제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거동이 불편해 학습이 불가능한 영예군인들을 위해서 북한전역의 영예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학습반도 설립되어 있다(NK조선. 2013.10.28.).

한편 영예군인에게는 공적연금을 지급하는데, 노동능력완전상실 1급, 노동능력완전상실 2급, 노동능력가능자 3급, 경노동가능자 4급에 따라 각기 다른 급여¹⁵⁾가 지급된다(이철수, 2003; 노용오, 2006: 229 재인용).

15) 1급의 경우, 연금(최종급여 사병100%·군관50%), 식량배급(1일-본인800g, 가족 400g), 원호금과 주택 무료 제공, 노동능력일부상실(1일 1-2시간 가능)이 2급은 연금(최종봉급기준 사병 100%, 군관 50%), 원호금, 식량배급(1일-본인700g)이, 3급은 연금(최종급여 50%-사병만해당) 식량배급(1일-본인 700g)이, 4급은 유급휴가, 무료치료가 제공된다(이철수, 2003; 노용오, 2006: 229 재인용).

4. 북한 장애인복지의 현황에 따른 남북교류 방향

가장 최근 확인된 북한의 장애인구는 6%대로서, 북한에서 장애인복지를 전달하기 위한 공급체계나 서비스 총량의 필요성 정도는 남한에 비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매우 단편적이고, 복지서비스공급체계도 각 장애 유형별로 광역지자체 당 1개소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장애인복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양과 질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 통합의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사회복지 체감도는 물질적 혜택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의 원칙’ 차원에서 볼 때 그 심리적인 편차가 상당할 것”(장용철, 2015: 9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급체계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 또한 매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우선적 작업으로는, 북한의 장애인복지가 총체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에, 특정 서비스가 아닌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장용철(2015: 91)은 “장애인종합복지관 12개소(평양 등 3개 특별시 및 9개 도단위 1개소)”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남북이 협력하여 1차적으로는 이 정도의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제NGO인 국제푸른나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동강 장애인종합회복원’ 건립이 지속히 완성되어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동강장애인종합회복원은 “지역사회복지의 거점센터로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의 다양한 세대와 문화, 교육, 여가 등을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한 자립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하며 남한과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연계와 상호 협력을 통해 북한 상황에 맞는 장애인복지 기술을 개발하고 인큐베이팅하여 구체적으로 북한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모델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할 것이다”(이준우, 2015: 21).

대동강장애인종합회복원 건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작업은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북한의 대내외채널로 조직한 연로자보호연맹, 장애자보호연맹, 조선어린이후원협회 등과 상대되는 남한내 복지단체 등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장용철, 2015: 92-93). 이는 현실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대북교류의 창구는 단일화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간에 장애인복지 교류협력에 혼란을 줄이고, 신뢰성과 책무성을 담보하며,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과의 교류를 실제적으로 시도했던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남한 NGO들이 개별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남한의 단일창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함께결음, 2015.08.01).

물론, 대북 장애인복지 교류협력의 단일창구를 맡은 기관이 모든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다. 남한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유형별 장애인단체들은 각 단체의 전문성을 살려서 북한의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북한의 유사한 장애유형별 단체와 각기 협력하되, 소통의 창구는 단일창구를 맡은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가령,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조선맹인협회와, 한국농아인협회는 조선농인협회 및 조선손말통역원협회와, 중앙정부차원의 장애인고용촉진기금과 지방정부(서울시) 차원의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은 조선장애자원아기금과 교류협력하며 서비스 제공협력 및 통합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에 공급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남한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접목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최초로 시행된 이래, 2009년 1차 시범사업, 2010년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사회서비스이다(장애인활동지원, 2016). 그 동안 축적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노하우를 북한 지역에 적용한다면, 북한의 중증장애인 재활과 사회통합에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서비스 공급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평양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가운데에 1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남한의 대학 1곳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북한의 재활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북한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을 시행”(이준우, 2015: 14)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활동지원기관은 북한에 건립이 될 장애인복지관 및 영예지원군인 지원 기관을 활용할 수 있겠다. 여기서 영예지원군인 지원기관의 경우, 상당히 발전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의 연계협력 및 상호 연구 등을 활발하게 수행할 필요도 있다.

이상과 같은 중장기적 과제 이외에, 보다 단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장애인보장구나 장애인교육용 교재를 지원, 장애인재활 기술 전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제푸른나무. 2016a. 국제푸른나무 홈페이지. <http://www.greentreekorea.org/>
- 국제푸른나무. 2016b. “국제푸른나무 2016년 2차 방북 보고서”. 국제푸른나무 홈페이지. <http://www.greentreekorea.org/>
- 김도균. 2005.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法治론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法學. Vol.46 No.1. pp. 446-513

- 김동일·배성직. 2001. 북한의 특수교육 - 역사적 전개와 현황에 대한 이해. 『특수교육연구』. 제8집. 27-46.
- 김동일·이태수. 2007. 북한의 장애인 교육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장애인보호법'의 내용과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42(3). 149-165.
- 김명옥. 2015. “우리 나라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인, 어린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의 법적담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 제61권 제2호.
- 김명희. 2007. 『기동성장애』. 파주: 수문사.
- 김석향. 2010. 북한의 공식담론에 나타나는 영예군인과 그를 돌보는 여성 이야기의 사회적 의미 분석. 『현대북한연구』. 13권 2호. pp.7-46
- 김석향. 2011. 북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현황 -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1호. pp. 85-110
- 노용오. 2006. 북한의 장애인복지 정책, 제도, 지원전략. 『한국동북아논총』. 41권. pp. 215-234.
- 로동신문. 2016.7.20. “제힘을 믿고 일어설 때 불가능이란 없다”
- 보건복지부. 2015.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 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 2003. “북한의 장애인은 66만여 명” 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 홈페이지. nkhealth.net
- 북한정보포털. 2016. 북한 지식사전: 고난의 행군. 북한정보포털 홈페이지. nkinfo.unikorea.go.kr
- 에이블뉴스. 2007.12.26. “북측에도 '장애인보호법'이 있어요”.
- 연합뉴스. 2006.02.23. “북한 신의주영예군인학원”
- 연합뉴스. 2006.05.15. "달천요양소 상이군인 치료 성과"
- 연합뉴스. 2013.12.06. “北 '장애인보호법' 개정...국제기준 반영”.
- 오정수. 2000. “남북교류와 사회복지 공공부문: 전망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45-69
- 이규창. 2013. 북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25권 2호. pp. 1-28
- 이준우. 2015. “남북한 장애인복지실천 협력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대구재활연구』, 제38호, pp. 43-68
- 이철수. 2012. 『긴급구조, 북한의 사회복지』, 파주: 한울아카데미.
- 이철수. 2003. 『북한사회복지: 반복지의 북한』, 서울: 청목출판사.
- 장애인활동지원. 2016.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http://www.ableservice.or.kr>
- 장용철. 2015. 통일대비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북한학연구』. 제11권 1호.

- 정지웅. 2016. “북한 장애인 관련 법규의 장애학적 고찰 : 노동지상주의와 집단주의가 초래하는 장애억압”. 『한국장애인복지학』, 제33권 제3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2009).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조선신보, 2014.06.24. “국제기구가입사업을 추진/조선맹인협회, 조선聋인협회에서”
- 조선신보. 2013.12.06. “인터뷰: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정현부장”
- 조선신보. 2013.12.07. 장애자들이 누리는 삶의 보람
- 조선신보. 2013.12.17. “문수기능회복원, 첨단설비를 무상제공/장애치료를 위한 모든 조건 갖추어”.
- 조선신보. 2014.12.17.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탈북자들의 장애자를 걸고든 《인권》소동을 규탄”
- 조선신보. 2015.12.10. “높아지는 장애인예술에 대한 관심”
- 조선신보. 2016.05.07. “장애자기능공학교에서 전문직업기술교육”
- 조선신보. 2016.2.13. “새 지하철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반향”
- 조선인권연구협회. 2014.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조선인권연구협회.
- 조선장애자보호련맹. 2016.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홈페이지.
- 좋은벗들. 2006. 『오늘의 북한소식』 제8호.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 좋은벗들. 2007. 『오늘의 북한소식』 제70호.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 최재영. 2016. “북한 아동들의 교육, 의료, 복지현장을 가다”. 통일뉴스.
- 통일뉴스. 2014. 10. 20. “운명의 장난, 리분회-현정화의 재회 무산”
- 통일뉴스. 2014.06.25. “조선맹인협회, 전문출판사와 맹학교 연결 정보망 구축”
- 통일연구원, 2015. 『북한인권백서 2015』. 통일연구원
- 통일연구원, 2016. 『북한인권백서 2016』. 통일연구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 함께걸음. 2015.08.01. “남북 장애우 교류, 이제부터 시작이다”. 함께걸음 홈페이지.
- NK조선. 2006.04.05. “北 "장애인 재활교육 관심””
- NK조선. 2013.10.28. “영예군인학교”
- 中西由起子. 2014. “アジア・ディスアビリティ・インスティテート: 北朝鮮の障害者”. asiadisability.com
- Collins, R. 2012. Marked for Life: SONGBUN, North Korea's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